



안 산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시행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인·허가 업무 수행 시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조 례 명 :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

○ 공 포 일 : 2021. 11. 10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(용적률 완화)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% 이상으로 정함(제15조의3)
-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준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(제15조의4)
- 산림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6조, 제18조, 제23조)
- 농경지 절·성토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6조의3)
-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제한(제27조)
- 시가지경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지 허용(제37조)
-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제51조)
-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(제51조)
-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(제51조)
-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 허용(별표3, 별표4, 별표5)

○ 상세내용 붙임 참조

붙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1부. 끝.

안 산 시 장

수신자 안산시건축사회, 안산시 토목·측량 설계사무소



주무관 조민준 도시정비팀장 김영진 도시계획과장 전결 2021. 11. 15. 조용대

협조자

시행 도시계획과-15259 (2021. 11. 15.) 접수

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,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(고잔동) / <http://www.ansan.go.kr/>

전화번호 031-481-2383 팩스번호 031-481-3212 / ratify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안산, 행복한 시민